

# 언론과 법

## 언론소송과 판결

### “보안사 안가 특해보도 명예훼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박동영)는 4일 조선일보사가 “보안사 안가를 사들이면서 신군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한겨레신문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사에 모두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 전 대표이사 방우영이 회고록을 통해 '12·12사건 직후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만났는데 그가 국방헌금 내는 셈 치고

신문사가 정동 안가를 인수해달라고 요구해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인수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이어 2001년 장영달 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래혹막을 밝히려며 조선일보와 보안사의 '토지 교환승낙서'를 공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회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의 인용보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신호탄이나 부정간 정치자금 수수의 증거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2001년 9월10일 국

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장영달 의원이 80년 4월 조선일보 방우영 당시 사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교환 승낙서'를 입수해 공개하며 “1980년 5억원이 넘는 보안사 정동 안가와 2억원에 불과한 조선일보사 연회동 가옥이 맞교환됐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확인 취재를 거쳐 “조선일보사의 눈부신 성장과 '권언유착' 의혹도 여기서 단서를 찾게 될 지도 모른다”는 등의 기사와 만평을 실은 바 있다.

한겨레 2005년 2월 5일

### 이신범 씨 국정원·검찰 상대 1억원 손해소

국가정보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기간 판결을 받은 이신범 전 의원은 27일 국가와 국가정보원 및 검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장에서 “국회의원의 직

무상 활동을 증거도 없이 기소해 6년 동안 괴롭힌 국정원과 검찰의 공권력 남용을 응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1999년 4월 “국정원이 국회의사당 529호실을 비밀사무실로 운영하며 정치권의 동향을 파악하고 감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으며, 국정원이 같은해 12월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기간으로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2005년 4월 27일

### 인터넷 명예훼손·성폭력 ‘위험수위’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과 성폭력이 최근 수년사이 급증, ‘위험수위’에 도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 산하 ‘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상담의뢰건수는 2001년 278건에 불과했으나 2002년 1천248건, 2003년 1천916건에 이어 지난해엔 2천285건으로 각각 파악됐다. 특히 이중 명예훼손 상담의뢰건수는 2001년 33건에 그쳤으나 2002년 115건, 2003년 894건, 2004년 979건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윤리위측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없이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의 상황으로 미뤄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 관계자는 특히 “명예훼손 등 사안이 중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권고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한다”며 “따라서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과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과 성폭력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온라인 실시간 상담시스템 구축과 홍보강화, 법률지문활동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접수된 각종 사이버 범죄신고건수는 지난 2002년 11만8천868건, 2003년 16만5천119건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의 경우에도 아직 통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약 20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2005년 2월 10일

## 대법, 특정한 모욕주는 ‘대화명’ 사용 유죄

인터넷 이용자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MSN 메신저에 특정인을 모욕하는 내용을 대화명으로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해직된 회사 대표를 모욕하는 내용의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MSN 메신저에서는 메신저 화면을 켜자마자 대화상대방들의 메신저 로그인과는 무관하게 대화명이 적시된 화면이 게재되는 만큼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화명을 사용,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이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인력채용 사이트에 게시한 글은 단순한 의견의 개진인 아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의 적시”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 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재작년 10월 모 컴퓨터 관련 업체에 고용된지 20여일만에 해고되자 이 회사 대표에게 욕설 내용의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하고, 인력채용 사이트 게시 판에 해직된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매일경제 2005년 2월 23일

## “김대업 씨 · 오마이뉴스 등 한나라에 1억 쥐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 씨와 이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 두 곳을 상대로 한나라당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른바 ‘병풍’ 사건의 핵심인 김씨는 5000만원, 오마

이뉴스는 3000만원, 주간지 일요시사는 2000만원을 한나라당에 물어주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2002년 7월 김씨가 “병무청 관계자와 한나라당이 병역비리 은폐를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하고, 오마이뉴스 등이 이를 보도하자 “허위보도로 대선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1, 2심 재판부는 “김씨 주장은 검찰 수사결과 허위로 밝혀졌다”면서 “오마이뉴스 등도 제보나 소문에 대해 고도의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고 무책임한 기사를 게재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005년 5월 10일

## 유인태 전 수석에 300만원 배상 판결

청와대 공식 기자회견에서 특정기자를 지칭하며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열린우리당 도봉을 국회의원)이 해당 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단독 김태훈 판사는 29일 대한매일신보(현 서울신문) 전 청와대 출입기자 곽OO 씨가 유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 의원은 곽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곽 기자는 2003년 10월 대한매일 1면에 당시 논란이던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 “대통령 재신임 투표, 야당에서 반대하면 강행하지 않겠

다”고 보도했다.

이에 유 의원은 “곽 기자가 자신의 질문을 나의 답변으로 왜곡해 보도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이어 곽 기자는 기자칼럼에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답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인 데도 오히려 청와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 보도했다.

유 의원은 칼럼이 보도된 날 오전, 기자들이 모인 청와대 춘추관에서 곽 기자를 지목, “정말 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다. 당신, 그러면 안 돼. 사기 치는 거야. 녹음이 안 돼 있다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것 아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 수석이 기자회견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기자를 직접 지명해 언성을 높여 항의한 것은 당시 참석자들에게 ‘곽 기자가 기자로서 전혀 없는 사실을 근거로 허위 기사를 게재했다’는 취지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또 “더욱이 곽 기자가 통화한 내용과 다른 취지로 보도했다고 해도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넘어 청와대 기자회견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언성을 높인 것은 곽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못 박았다

조선일보 2005년 4월 30일

## '靑에 北스파이 침투설' 언론사, 靑 맞고소

황인성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최근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인터넷 매체 프린티어 타임스의 대표이사과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해당 언론사가 명예훼손이라며 맞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린티어 타임스는 21일 "본지에 보도된 기사는 단순 허위사실이나 단순 추측으로 쓴 글이 아니다"면서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있다’는 내용은 본지 주관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또한 "황 비서관이 몇 번의 욕고를 치렀다는 이유로 북한의 스파이라고 보도한 사실이 없다"면서 "과거 이미 밝혀진 내용과 법원이 내린 판결 등을 근거로 기사를 쓴 것이지 기사 속에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주장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황 비서

관이 주장하는 내용은 비방이자 매도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 비서관이 "허위사실의 나열과 무분별한 비약, 추측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한 보도기사인지 극우단체의 매터도적 유인물인지 구분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중도·정도를 표방하는 신문인 본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극우단체로 비하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좌파, 우파를 나눠 편가르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프린티어 타임스는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는 기사를 최초 보도한 일본의 주간지 ‘주간문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본지 기사가 보도된지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황 비서관이 본지를 ‘허위 보도’라며 고소한 사실을 보도 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창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프린티어 타임스는 지난해 11

월 2일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이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는 보도에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친북 좌파들의 급부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청와대 인사는 황인성 시민사회비서관"이라며 황 비서관의 이력을 상세히 소개했다.

황 비서관은 고소장에서 "허위사실의 나열과 무분별한 비약, 추측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한 보도기사인지 극우단체의 매터도적 유인물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며 "몇번의 욕고를 치렀다는 사실을 들어 ‘북한의 스파이’라는 주장을 들어 ‘북한의 스파이’라는 주장을 어이없는 매도이자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인터넷 매체를 고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일보 2005년 2월 21일

## “총풍 때 안기부가 사생활공개, 국가책임 5천만원 배상하라”

이른바 '총풍' 사건에서 안기부가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윤기)는 17일 오후(53)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장OO(56)씨가 "안기부의 가혹행위,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오씨에게 1천만원, 장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언론에 보도된 안기부 내부 문건에 '내연의 여자가 있다' '빛 때문에 이 사건을 모의했다'는 등 장씨의 사생활을 공개한 것

은 정당한 수사 발표를 넘어서 명예훼손"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해명할 목적으로 안기부가 문건을 작성했고, 문건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이들을 조사할 때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해 정신적 고통을 끼친 데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 당시 '고문에 의한 안기부의 조작극'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큰 논란이 일었던 점과 관련해, 재판부는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문을 당한 상황에 대한 장씨와 오씨의 진술이 계속 바

뀐 점이나 장씨의 멍든 몸을 찍은 사진을 감정한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03년 이 사건 상고심에서 "총격 요청 등 한씨의 돌출행동이 있었지만 세 사람 사이에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나, 고문·조작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총풍 사건은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씨와 장씨, 그리고 한OO(46)씨가 관문점 총격시위를 북한에 요청했던 사건을 말한다.

한겨레 2005년 4월 17일

## 경찰 ‘패러디 수사’ 청와대 지침없이 골머리

경찰이 한 보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이른바 ‘대통령 저격 패러디’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쳤지만 청와대의 ‘지침’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패러디 만평을 실은 인터넷 매체 ‘독립신문’ 대표 신OO 씨(36)와 이 패러디를 제작한 A(21)씨를 조사하고 독립신문 서버와 A씨의 개인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마쳤다.

경찰은 그러나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청와대의 지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의사불벌죄는 공소 제기할 때 피해자에게 처벌을 요구하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이지만 명예훼손 자체에 대해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

서 “위임을 해도 되는 만큼 청와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패러디 그림은 지난 16일 우익 인터넷 매체 ‘독립신문’에 한 네티즌이 독자 투고 형식으로 올린 것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마를 저격수가 정조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2005년 5월 10일

## 검찰, 수사과정 피의사실 공표 엄격 제한

검찰은 앞으로 피조사자의 소환사실 공개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단계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 방침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피조사자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리에 연루된 일부 정치권의 불만과 청와대의 문제제기에 떠밀려 국민의 알권리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찮아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4일 제42회 법의 날을 맞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검찰은 중립적 수사 못지 않게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도 절실하다는 국민적 여론을 수용하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문제제기 등을 감안,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문제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제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피조사자의 소환사실 공개 및 중간수사 발표 등을 강력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언론사로부터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 문의시 이를 확인해주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사 담당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인권침해 사례에 준해 자체 감찰활동을 벌어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문제가 ‘언론사간 과당 취재경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오보를 내거나 청사내 사진촬영 금지 등 취재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기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등 언론사에 대한 직접 제재도 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 등 심리단계에서 피의사실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행개선을 요청하고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이나 검찰 송치시 피의사실 공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번 방침은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현행과 같은 브리핑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언급, 수사와 관련된 대언론 브리핑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조사자가 수사담당자를 쉽

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관 실명제를 도입하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및 가족 참관의 확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감찰 및 인사반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검찰과 별도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감청영장 신청시에도 구속영장처럼 ‘영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증거물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 증거물의 훼손 및 유실 등을 방지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반말·욕설 등 비하적 언어사용을 일절 금지하고 원격 화상조사제를 현행 고소인·참고인에서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며 조사시간을 자정으로 제한하는 등 밤샘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검찰은 동의없는 임의동행 금지, 긴급체포시 감독자의 사전승인 등 영장주의와 불구속 수사원칙을 준수하고 주민등록 사항이나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 조회를 엄격 통제하며 범죄 피해자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에도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2005년 4월 25일